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KCC  
Pegulations in 2020

2020.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03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KCC  
Regulations in 2020)

황유선/김남두/김경은/송민선/김호정

2020.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  
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황유선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남두 연구위원

김경은 부연구위원

송민선 전문연구원

김호정 전문연구원





# 목 차

요약문 .....	vii
<b>제 1 장 규제비용관리제 개관 .....</b>	<b>1</b>
제 1 절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	1
1. 규제비용관리제 개념 .....	1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	1
3.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유형 .....	3
4. 세부절차 .....	3
5. 규제영향분석서와의 관계 .....	7
제 2 절 규제비용분석 주요 내용 .....	10
1. 주요 개념 .....	10
2. 분석방법 .....	16
3. 비용·편익 산정시 유의사항 .....	17
<b>제 2 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 .....</b>	<b>20</b>
제 1 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20
1. 주요 내용 .....	20
2. 규제비용분석 .....	34
제 2 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52
1. 주요 내용 .....	52
2. 규제비용분석 .....	53
제 3 절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 .....	55
1. 주요 내용 .....	55
2. 규제비용분석 .....	56

제 4 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	69
1. 주요 내용 .....	69
2. 규제비용분석 .....	71
제 5 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73
1. 주요 내용 .....	73
2. 규제비용분석 .....	83
제 6 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87
1. 주요 내용 .....	87
2. 규제비용분석 .....	89
제 7 절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 .....	90
1. 주요 내용 .....	90
2. 규제비용분석 .....	93
제 8 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	94
1. 주요 내용 .....	94
2. 규제비용분석 .....	97
<b>참고문헌</b> .....	<b>98</b>

# 표 목 차

〈표 1-1-1〉	규제심사 절차 흐름도	7
〈표 1-1-2〉	규제영향분석의 유형	8
〈표 1-1-3〉	규제영향분석서상 비용편익분석 양식	9
〈표 1-2-1〉	비용편익의 직·간접 범위	11
〈표 1-2-2〉	직접비용 세부내용	13
〈표 1-2-3〉	직접비용 항목별 산출공식(예시)	14
〈표 2-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신·구조문 대비표	20
〈표 2-1-2〉	연도별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수(추정, 차등화실시)	40
〈표 2-1-3〉	연도별 세부비용	44
〈표 2-1-4〉	규제비용분석표	45
〈표 2-1-5〉	차등화 미실시시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수(추정)	48
〈표 2-1-6〉	차등화 미실시 규제비용	49
〈표 2-1-7〉	차등화 실시 규제비용	50
〈표 2-1-8〉	규제차등화 실적	51
〈표 2-2-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52
〈표 2-3-1〉	방송법 제74조 신·구조문 대비표	55
〈표 2-4-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8조 신·구조문 대비표	69
〈표 2-5-1〉	전기통신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73
〈표 2-5-2〉	주요국의 동의를결제도	80
〈표 2-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87
〈표 2-7-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신·구조문 대비표	90
〈표 2-8-1〉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94



# 요 약 문

## 1. 제 목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2020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적용 여부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 또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등에 대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여부 및 필요시 각 개정안의 비용편익 결과를 도출하였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등은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비용 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유의미한 수준의 직접

비용 또는 직접편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특정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따른 직접비용이 발생한다. 관련 비용은 관련 시스템 개발비와 운용비용으로 구분되며, 시스템 개발비는 일회성, 운용비용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매년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자의 전체 개수와 매년 신규로 포섭되는 사업자의 규모를 추정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다만,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 효과 또한 발생한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범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하고,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기대효과

본 연구가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규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SUMMARY

## 1. Title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KCC Regulations in 2020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nt of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regulations enacted and revised in 2020. While reviewing the benefits and costs incurred by each amendment, it also looked at the effect of cost reduct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 to the size of fi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such review.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is applied to various regulations revised or enacted in 2020 by KCC related to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 4. Research Results

All regulations other than the regulation about the prevention of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was conclud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rect costs or direct benefits.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etc., direct costs are incurred as certain types of value-adde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ust implement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etc. The related cost is divided into the related system development cost and operation cost, and the system development cost is one-time and temporary while the operation cost is repeatedly incurred every year. Accordingly, the direct cost was calculated by estimating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 each year and the size of new business operators each year. However, according to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business operators, the effect of reducing regulatory costs also occurs.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rough this study, concrete and practical examples of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are accumulated, and by presenting measures to reduce regulatory cos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the utiliza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manual is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in the long term, through careful cost analys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 **6. Expectations**

We believ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while increasing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 CONTENTS

Chapter 1.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Regulations in 2020

Chapter 2.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by Regulation



# 제 1 장 규제비용관리제 개관<sup>1)</sup>

## 제 1 절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 1. 규제비용관리제 개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부처별로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규제순편익이 발생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각 부처는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 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반기별 규제비용의 관리현황을 공표

###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로서 기업·소상공인 등 피규제자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

1) 본 장의 내용은 국무조정실의 '2017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과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기반으로 작성함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연간비용으로 환산한 연간균등순비용이 규제 비용관리제의 관리대상

- 다만, 다음 사항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 되지 못하는 상황 예방

〈적용제외 사유〉

-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④ 금융·외환시스템 위협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 ⑥ 1년 이하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 기존 규제의 정비시 규제신문고 개선사항, 자체규제 완화 등 부처가 상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정비한 실적을 활용할 수 있음

- 단, 폐지·완화 규제는 당해 연도에 법령 개정이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제출

### 3.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유형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유형은 표준절차와 간편절차로 분류
- 표준절차는 규제연구센터의 1차 비용분석검증을 거친 후,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 실시
- 이에 반해, 간편절차는 비용분석 대상이나, 규제비용이 낮은 규제(연간 직접비용 10억원 미만)의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부처의 규제심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생략하는 간편절차(Fast-Track) 적용
  - 다만, 간편절차의 경우에도 규제연구센터의 1차 검증 과정에서 규제비용을 현저하게 낮게 추정할 경우 등은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분석의 기본적인 수치(직접비용, 직접편익, 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등)를 제시해야 함

### 4. 세부절차

- ① 규제심사대상여부 및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결정 및 규제영향분석(국무조정실 / 부처)
  - 국무조정실은 부처와의 사전협의 시 규제심사 대상여부 및 규제의 유형에 따른 표준형RIA-간이형RIA 작성 대상 여부 통보
  -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활용)

-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편익도 분석하여 규제 비용분석서 작성(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활용)
- 다만, 신설·강화 규제가 직접비용보다 직접편익이 크거나 같은 경우 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제 폐지·완화가 요구되지 않음

② 규제비용편익분석 자체 검증(부처 비용전문TF)

- 부처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 내 담당 공무원, 비용·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전문TF를 설치,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자체 검증
-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

③ 규제비용편익분석 1차 검증(규제연구센터)

- 표준형RIA는 규제연구센터에서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적정성검토 (입법예고 기간 중 검증 추진)
- 경제부처(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사회 부처(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규제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비용분석의 적정성 검증

<Check list>

- 공식적인 통계 미비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
-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비용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
-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
- 신뢰성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 할인율을 고려,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제시했는가?
-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가?

-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비용 분석·검증을 마친 후, 검증 결과 통보

- 이 때, 규제연구센터는 규제비용분석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1차 검증을 완료

- 검증 결과는 동의, 보완, 보완 재제출 중에서 제시

- 부처는 규제연구센터의 검토결과가 보완(재제출 필요)인 경우,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2차 제출하고 재검증을 받아야 함

- 부처는 원칙적으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차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

④ 규제비용편익분석 2차 검증(비용분석위원회)

- 국무조정실은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완료 후 7일 내 비용분석위원회에 비용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비용분석서)를 상정
- 비용분석위원회는 비용분석 검증의 적정성 및 규제비용 교환에 따른 적립분 (banking)에 대해 판단
- 규제 직접비용·편익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비용분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 비용분석위에 부처 참석 가능

⑤ 예비심사/본심사(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결과를 고려하여 규제심사를 진행

⑥ 규제비용의 정산(국무조정실)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 적립분(저축 또는 부채)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시점에 예비 정산·관리
- 실제 정산·관리는 규제 등록·변경등록시를 기점으로 함
- 부처별로 적립된 규제순비용은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

⑦ 규제비용의 관리 및 공개(각 부처)

- 부처는 반기별로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 규제의 정비 추진현황 등 규제비용관리 현황을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



- 국무조정실은 연간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등 규제비용관리 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

## 5. 규제영향분석서와의 관계

-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분석 파트 역할

〈표 1-1-1〉 규제심사 절차 흐름도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비고
정책입안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li> <li>•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li> </ul> </li> </ul>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 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li> <li>※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li> </ul> </li> </ul>	입법예고 7일 전까지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규제조정실(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심사 대상 여부/규제영향분석 유형(표준/간이형)결정/비용관리제 적용여부 예비검토</li> <li>※ 심사 비대상은 심사종결</li> </ul>	입법예고전
입법예고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li> </ul>	40일간(행정예고 20일간)
규제영향분석서 검증(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1차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li> <li>※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2차 검증 대상 확정</li> </ul> </li> </ul>	1차 검토·수정(10일내) 2차 검토·수정(5일이내)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비고
규제영향 분석서 검증 (비용분석 검증)	비용분석 위원회 (2차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중 연간균등순비용 10억원 이상, 비용상 중요규제(직간접 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폐지·완화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심의</li> <li>※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li> </ul>	7일 이내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li> <li>•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li> </ul>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 규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li> <li>•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li> </ul>	
규제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예비심사 → 본심사</li> <li>※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심사 종결</li> </ul>	심사요청일로부터 예비심사 10일 이내, 본 심사 45일 이내

-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에도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

〈표 1-1-2〉 규제영향분석의 유형

작성유형	기 준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li> <li>•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li> <li>•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li> <li>•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li> </ul>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규제</li> </ul>

-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도입규제를 포함한 복수의 대안규제를 모두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분석은 도입대상 규제에 대해서만 실시
  - 규제대안의 영향집단을 식별하고, 비용편익 항목을 설정하여 각각의 값을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에 입력하면 순비용 및 연간균등순비용<sup>2)</sup>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
  - 현재 규제영향분석상 규제비용분석 관련 양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표 1-1-3〉 규제영향분석서상 비용편익분석 양식

분석기준연도	규제시행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2) 연간균등순비용은 규제의 순비용 현재가치를 연간 지급률 계수(annuity rate)로 나누어 환산한 값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순비용 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비용이 연도별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은 규제사무별로 분석대상 기간 및 비용발생 기간이 상이한 상황에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분석기준연도	규제시행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주: 대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의 명칭

분석기준연도: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연도

규제시행연도: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연도(예를 들어 2019년에 비용·편익분석이 작성된 규제안건이 2021년에 시행된다면 분석기준연도는 2019년이고 시행연도는 2021년임)

할인율: 미래의 비용·편익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준용(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재는 4.5% 사용)

## 제 2 절 규제비용분석 주요 내용

### 1. 주요 개념

○ (비용)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

- 직접비용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2차적 효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

○ (편익) 편익도 마찬가지로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

- 직접편익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하며, 간접 편익은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

〈표 1-2-1〉 비용·편익의 직·간접 범위

구분	범 위
직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li> <li>• (노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li> <li>• (교육훈련) 교육 훈련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li> <li>• (외부서비스)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비용 등 외부기관에 지출된 비용</li> <li>• (설비) 기계장비 등의 기자재 구입비용</li> <li>• (원재료) 규제로 인해 사용된 각종 투입재 비용</li> <li>• (운영) 규제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 (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li> <li>• (지연비용) 규제이행에 따른 사업운영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이익의 감소</li> <li>• (기타)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등</li> </ul>
간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감소) 피규제 기업이 생산·공급하던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li> <li>• (매출감소)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 발생시 상품단가를 인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감소</li> <li>• (기회비용) 규제로 인해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급 및 영업방식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이윤 등</li> </ul>
직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절감) 피규제자가 지불했던 비용 혹은 부담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li> <li>• (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li> <li>• (기타 영업이익) 변경된 규제의 시행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영업이익, 기업의 이윤 등</li> </ul>
간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증가) 피규제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품질 향상 등으로 당해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li> <li>• (매출증가) 규제로 인해 특정원료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대체원료의 매출증가</li> <li>• 그 밖의 환경오염 개선, 국민안전, 삶의 질 등 사회 전체적 편익</li> </ul>

-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과 연계됨에 따라 직·간접 구분은 규제영향집단 중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서만 구분하여 적용하고, 그 외 규제영향집단은 직접/간접 구분 없이 분석을 실시

- 규제에 따른 매출증가(감소)는 현재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상 간접편익(비용)으로 규정
- (편익개념에 대한 논의) 직접편익은 영업이익, 기업의 이윤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에 따라 매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매뉴얼상 편익은 매출 증가분이 아닌 이윤 증가분으로 산출
  - 이러한 규정은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요소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한 것과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존재
  - 기업의 이윤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이윤 자체가 순편익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편익을 매출 증가가 아닌 이윤 증가로 규정하는 경우 비용을 이중 차감하는 상황이 발생
  - 예를 들어, 규제 완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이 매우 증가했을 경우, 편익의 크기는 광고매출증가분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이윤율을 이용해 영업이익의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sup>3)</sup>
  - 한편, 영업이익 산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영업이익률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의 광고영업조직에서 추가적인 광고매출 증가를 위해 이전과 동일한 평균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sup>4)</sup>

---

3) 대체로 매출증가는 직접편익이 아닌 간접편익으로 구분되며 규제비용관리제에서의 비용 편익분석 주대상은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이므로, 본 사례는 규제비용관리제에서의 비용 검증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음

4) 한계비용을 산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영업이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위의 사례에서 편익을 광고매출 증가에 따른 이윤 증가분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매출 증가를 위해 수반되는 비용은 이미 순편익의 개념으로 편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포함하지 말아야 함
- 이와 같이 현재 매뉴얼상 편익의 개념은 경제학에서의 잉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고 있는 구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

〈표 1-2-2〉 직접비용 세부내용

구분	설명
① 행정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 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li> <li>• <b>보고비용</b>: 신고, 보고, 제출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로 주로 보고시점 근처에서 발생</li> <li>• <b>허가비용</b>: 인·허가, 갱신, 승인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 및 수수료로 주로 허가시점 근처에 발생</li> <li>• <b>기록비용</b>: 기록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상시적으로 발생</li> <li>★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확인·집계 등의 작업비용은 행정부담이 아닌 노동비용</li> </ul>
②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소요되는 직접 노동비용</li> </ul>
③ 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훈련 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li> <li>• <b>교육훈련 비용</b>: 강사료, 수강료와 기타 필요 숙박비, 교육재료비 등의 부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료: 교육대상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강사비가 발생하는 경우</li> <li>- 수강료: 일정한 강사비가 아닌 교육대상수에 따라 상이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li> </ul> </li> <li>• <b>교육참여에 따른 기회비용</b>: 기존에 하지 않았던 교육 수행을 위해 인력이 일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이윤 감소</li> </ul>

구분	설명
④ 외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시 규제순응을 위해 발생하는 외부서비스 비용</li> <li>• <b>자문서비스:</b> 규제 준수를 위해 사용한 전문가 자문비용(변호사, 엔지니어 등)</li> <li>• <b>자문 외 외부서비스:</b> 시스템 설치비 및 시스템 운용비 등의 위탁비용</li> </ul>
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투입한 자본재(설비)의 구입비용</li> </ul>
⑥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사용한 각종 투입재 비용</li> <li>• <b>원재료 구매:</b>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새롭게 구매한 원재료의 수명이 다하여 분석 기간 내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li> <li>• <b>원재료 폐기:</b> 기존의 원재료를 새로운 원재료로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원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li> <li>★ 규제순응을 위해 기존 구축된 건물의 유리 등 마감재, 단열재 일부구입은 원재료비에 해당</li> </ul>
⑦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li> <li>• 임차료, 설비(기계) 유지보수 비용(감가상각비), 사무용품 등 구입비용, 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li> <li>★ 기동 추가 및 제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대수선비는 설비비에 포함</li> </ul>
⑧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피규제자의 운영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익감소</li> </ul>
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비용,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비용을 제외한 기타 순응비용</li> <li>★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에 대해 명확히 서술</li> </ul>

〈표 1-2-3〉 직접비용 항목별 산출공식(예시)

구분	산출공식(예시)
① 행정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투입인원 × 연간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li> <li>- 연간투입인원 × 1일당 투입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가격 × 연간발생횟수 × 피규제자수</li> </ul>



구분	산출공식(예시)	
②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투입인원 × 연간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li> <li>- 연간투입인원 × 1일당 투입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li> </ul>	
③ 교육 훈련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교육횟수 × [강사료 + 교육과정비] × 피규제자수</li> <li>- 교육대상자수 × 연간교육횟수 × [수강료 + 교육과정비] × 피규제자수</li> </ul>
	교육참여 기회비용	- 일일영업이익(원) × 교육으로 인한 비영업일 × 피규제자수
④ 외부 서비스	자문서비스	- 외부전문가활용비 × 전문가수 × 연간자문횟수 × 피규제자수
	자문의 외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설치비 × 피규제자수</li> <li>- (외부인건비(과건 등) + 시스템운영비(위탁경우)) × 연간횟수 × 피규제자수</li> </ul>
⑤ 설비	- 구매비용 × 연간구매횟수 × 피규제자수	
⑥ 원재료	원재료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단가(원) × 연간구매단위 × 피규제자수</li> <li>- (변경원재료단가-기존원재료단가) × 연간구매단위 × 피규제자수</li> </ul>
	원재료 폐기	- 피규제자 당 원재료 폐기비용 × 피규제자수
⑦ 운영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원/년)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li> <li>- 임차료(원/분기) × 4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li> <li>- 임차료(원/월) × 12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li> </ul>
	설비(기계) 유지보수	- 유지보수비용 × 피규제자수 × 보유대수
	사무용품등 구입비용	- 단가 × 피규제자수 × 연간구입개수
	전기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요금(원/년) × 피규제자수 × 해당건물수</li> <li>- 전기요금(원/월) × 12 × 피규제자수 × 해당건물수</li> </ul>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당대중교통요금 × 피규제자수 × 연간이동횟수</li> <li>- 교통비(원/월) × 12 × 피규제자수</li> <li>- 주유비(원/월) × 12 × 피규제자수</li> </ul>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 연간납입횟수 × 피규제자수</li> <li>- 보험가입비 × 피규제자수</li> </ul>
⑧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영업이익* × 영업지연일 × 피규제자수</li> <li>* 월, 분기, 연단위로 산정된 영업이익의 경우 일단위로 환산하여 사용</li> </ul>	
⑨ 기타	- 이상의 비용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별로 산출공식 활용	

## 2. 분석방법

- (측정대상) 모든 영향집단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측정
  - 피규제자인 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직·간접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순비용 측정(규제비용관리제의 관리 대상)
  - 기타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직·간접 구분 없이 비용과 편익 측정
- (분석대상 기간)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규제비용 발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측정방법) 신설·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증가분을 계산
  - 구체적으로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규제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순비용만 측정하나,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분만을 계산
- (할인율)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산해야 함
  - 현재 할인율 4.5%를 적용

•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

- 미래의 비용·편익을 할인,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
- 10년 후의 1원이 현재의 1원과 다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개별결과값들의 가치를 평가

$$PV(Bn) = \frac{Bn}{(1+r)^n} \quad (r: \text{할인율}, B: \text{편익})$$

- r은 할인율이고, 규제가 발효된 n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Bn이라 하면, Bn을 규제시행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는 PV(Bn)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비용(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를 먼저 구하고 이를 발생하는 비용액(편익액)에 곱하여 계산

$$\text{할인계수} = \frac{1}{(1+r)^t} \quad (r: \text{할인율}, t: \text{해당년도})$$

### 3. 비용·편익 산정시 유의사항

○ 자료의 취합 및 분석 관련

- 가격, 비용·편익, 임금 등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는 통계청, 한국은행, 조달청 등 공식력 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가급적 직전 연도(혹은 가용한 가장 최신년도) 연말 기준 수치를 사용하되, 일관된 가격변수를 사용

- 특히, 인건비 통계는 '고용노동통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통계가 없거나 특수 분야로 별도의 지표값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설문조사, 기타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추정치 등을 통해 얻은 지표값 사용 가능
  - 중요 수치의 경우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나 증감률을 감안, 분석에 반영
  - 비용·편익의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산식, 산출근거와 출처 및 분석 가정을 명시
  - 비용·편익의 발생은 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특별한 경우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분석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주무부처는 가급적 직접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발생 여부 및 비용·편익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 그 결과를 비용분석에 포함
- 과거자료 사용 경우
- 비용·편익분석에서 2년 이상 경과한 과거 비용단가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정
  - 규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세한 근거 서술이 필요

○ 비용·편익·순비용의 현재가치 산정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편익·순비용을 현재가치로 변환하여 제시

▷ 순비용현재가치 등 산정은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에서 자동산정

○ 가격기준연도와 현재가치기준연도

－ 가격기준연도: 대안별 비용·편익 산정시 사용한 가격지표 중 최신자료의 연도

－ 현재가치기준연도: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연도(일반적으로 분석이 실시된 당해 연도)

## 제 2 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sup>5)</sup>

### 제 1 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p> <p>① 법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p> <p>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p> <p>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p> <p>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용역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p>

5)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정안별 비용분석의 경우, 개정안이 최종 입법되기 전에 실시된 것으로, 입법된 최종 개정안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비용분석의 내용 또한 규제비용관리제에 반영된 최종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안이 최종 입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p> <p>나.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서비스</p> <p>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p> <p>② 법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li> <li>2. 정보의 제목·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된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거나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li> <li>3. 정보의 특징 비교를 통해 해당 정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li> <li>4. 불법촬영물등을 게재·공유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li> </ol> <p>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p> <p>⑤ 법 제22조의5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치의무사업자, 관계 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N번방 사건 발생으로,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가해자 엄벌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 의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증가

※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발표(3.31)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요청, 탁틱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강화 요청 등

※ 국무조정실 주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 4. 23.)의 주요내용으로 포함

-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건잡을 수 없고,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디지털성착취물의 특성상 선제적인 유통방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방심위 등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이 인터넷상에서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등에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의 게재를 제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단어(명칭)의 검색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 필요
- 아울러, 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신고기능이 필요하며,
-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 유통 시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경고하는 관리적 조치도 필요
- 다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경우 영세사업자에 재정적·관리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어 법제22조의5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따라서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 서비스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하였음

□ 규제 도입 목적

- 신고·삭제요청으로 인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어,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일부 사업자에 의무화 함
-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 시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이용자가 조치의무사업자에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여,
  - 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둘째, 정보의 명칭(제목, 검색어 등) 등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검색을 제한(금칙어 기능 등)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셋째, 영상의 특징(해시값, DNA값 등)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의 DB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일명 ‘필터링 조치’) 하도록 하였음
  - 이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기계적으로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조치로, 재유통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임
-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 정부에서 개발·보급 예정인 필터링 기술이 아닌 사업자의 자체적인 필터링 기술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방통위가 위탁하는 기관·단체의 성능 평가를 통과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기술적 조치의 적용 실태를 향후에 정부에서 점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의무사업자에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웹하드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유통시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일반에게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이용자가 공유·계재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 검색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함
- 기술적 조치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영상의 특징(해시값, DNA값 등)에 기반하여 필터링하는 조치가 모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 하더라도,
  - 헌법재판소는 일정정도 대상 정보의 유통·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 ※ “설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도 미처 발견할 수 없는 아동음란물이 있다거나, 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아동음란물을 보관·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으로 차단되거나 손쉽게 되지 않음으로써 아동음란물 유통·확산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다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016헌가15)
- 또한, 성능평가 등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간 웹하드 사업자에 불법음란물에 대한 영상 필터링, 검색결과 제한 기능 등의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삭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왔으나,

- N번방 사건과 같이 웹하드가 아닌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
-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영상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을 기계적으로 자동차단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을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일반에게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이용자가 공유·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 검색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불필요하게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공적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으로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웹하드사업자는 법제22조의3에 따라 불법음란물에 대해서도 기술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전체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 특히, '웹하드 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의 서비스 성격을 고려할 때, 기존의 불법음란물과 함께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도 모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동시에,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또한, 과기부 R&D 사업을 통해 사업자들이 영상 필터링 시 활용할 수 있도록「(가칭) 표준 DNA DB」 기술을 개발·보급할 예정으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할 기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3제2항 규정을 참고하되, 경찰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3년으로 상향 규정

####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영국)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백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동 성착취, 테러 등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 같은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 시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음

- 댓글, 포럼, 영상 공유 등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적용

- (독일) 명백하게 위법한 게시물\*은 이용자의 신고 후 24시간 내, 그 외 모든 위법 게시물은 7일 이내 삭제·차단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

- \* 형법상 규정된 21개 범죄(공연한 범죄선동, 범죄단체조직, 테러단체, 모욕, 비방, 중상, 협박,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 국민선동, 폭력물 반포 등, 범죄 대가 지급 및 찬양,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 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유 등)

- 영리 목적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통신미디어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용자 2백만명 이상)를 대상으로 함

- ※ 다만, 네트워크, 전문포털, 온라인 게임, 물건판매플랫폼, 개인통신 서비스 등은 예외

-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성착취와 관련한 명백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NCMEC\*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비영리단체)로, 신고받은 정보를 연방 경찰 등에 제공해야 함

- \*\* 범죄에 연류된 자에 대한 정보, 해당 상황, 정보의 지리적 위치, 아동성착취 관련 시각적 자료, 해당 정보 관련 전체 대화

- 연방통신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립학교 및 도서관에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아동인터넷보호법)

○ 타법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도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 〉

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도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 〉

법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중 제목, 특징을 비교하여 인식하고, 이용자의 검색 또는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조치 등을 참고하되, 부가통신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송수신’ 등의 용어를 이용자의 ‘계재’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의 단어로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3조제13호가 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 또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기존 청소년성 보호법 상 관련 규정 중, 이용자의 신고 기능,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자료를 인식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내용을 참조함

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물등을 인식하고,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의 내용을 참 조함

〈 저작권법 시행령 〉

저작권법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 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 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성능평가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서 영상 필터링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능평가 제도를 참고하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관련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방통위에서 성능평가를 시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토록 함

## < 저작권법 시행령 >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2. 규제비용분석

### □ 피규제자 범위

-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조치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1차적으로 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② 부가통신사업자 중 특정 서비스 유형 및 일정 규모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로 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P2P 및 웹하드 사업자는 전체가 조치의무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미 본 개정안에서 부과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 개정안에 부과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 면담결과)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2019년 제정·시행)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 조치의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①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필터링 기술)
- ②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모니터링 등)
- ③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경고문구 발송)
- ④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관(로그기록 보관)
- 따라서 이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라 직접비용이 발생하는 피규제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한정된다고 가정함
- 본 개정안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로 피규제자의 범위를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이들 사업자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피규제자에 해당
  -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서비스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 위에 해당하더라도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용역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

□ 피규제자 규모- 부가통신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대외비)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4분기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PC웹사이트 사업자 수는 190개, 앱 사업자 수(중복제외)는 351개로 합계는 541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에는 사업자별 등록일과 사업자명만 존재하며, 서비스 유형,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본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함(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유사함)

※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19,194개, 2017년 17,073개, 2018년 16,159개, 2019년 15,478개, 2020년 15,030개 등 사업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온라인 영역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음. 이렇게 등록 사업자 수치가 시장 추세와 상이한 것은 상당수 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현재까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과기부에서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 이들 사업자 중 개정안에서 규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60개로 추정됨

#### □ 10년(분석기간) 간 발생 비용 대상 사업자 추이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4분기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

- 본 비용분석에서 사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대외비)의 경우 최근 3  
개년(2018년~2020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나, 앱사업자의 경우 2020년부터 조사  
하고 있어 계열 추세를 산출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부득이 PC웹사이트 사업자 수  
치('18~'20)를 이용한 추세를 반영함

- PC웹사이트 사업자 추이가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PC웹사이트 사업자 추이를 활용하여 피규제자 수를 추정하고자 함

※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규모의 경우 2016년 19,194개, 2017년 17,073개, 2018년  
16,159개, 2019년 15,478개, 2020년 15,030개 등 사업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온라인 영역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 배제

-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PC웹사이트 사업자 추이를 살  
펴보면,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4분기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PC웹사이트 사업자 수는 2018년 144개, 2019년 152개, 2020년 190개로 최  
근 3년간 연평균 14.9% 증가

- 추이를 판단하기에는 시계열이 다소 짧다는 문제가 있으나 온라인 분야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하  
여 연도별 사업자 수 추정

-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2020년 기준 부가통신사업자 중 개정안에서 명시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수는 60개로, 이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541개 중  
11.1%에 해당



- 가용자료의 부족으로 해당 비중의 시계열 추이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중 해당 유형의 사업자 비중은 2020년과 동일하게 매년 11.1%라고 가정
- 한편, 이들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 수는 2019년 33개, 2020년 59개로, 신규 사업자 비중은 2019년 21.7%(=33/152), 2020년 31.1%(=59/190), 2개년 평균값은 26.4%
- 본 분석에서 지칭하는 신규사업자는 조치의무대상사업자(해당 유형 및 일정규모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로 새롭게 지정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하며 ① 기존 부가통신사업자 중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규모가 성장하는 등으로 인해 새롭게 포함된 사업자, ② 새로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했거나 ③ 유형을 변경한 사업자 중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함
- 위의 수치를 활용하여,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4분기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수는 연평균 14.9%로 증가하며, 이 중 개정안 대상 유형 사업자는 11.1%이며, 이 중 신규사업자 수는 26.4%에 해당한다고 가정
- 이러한 가정에 따라, 연도별 피규제자가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표 2-1-2〉 연도별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수(추정, 차등화실시)

연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수(A)	대상 사업자 수(B)	신규 사업자 수(C)
2021	541	60	
2022	621	69	18
2023	714	79	21
2024	820	91	24
2025	942	105	28
2026	1,082	120	32
2027	1,243	138	36
2028	1,427	158	42
2029	1,640	182	48
2030	1,883	209	55

※ 시장에서 퇴장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자 수와의 사업자 수 차이가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 수보다 작게 나타남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수(A)는 매년 1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대상사업자 수 (B)는(A)의 11.1%로 추정(B=A×0.111)

⇒ 따라서, 결과적으로(B)도 매년 14.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함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수치를 설명하면,

$$A = 541 \times (1 + 0.149)$$

B = A × 0.111이므로, A가 매년 14.9% 증가하게 되면, B도 마찬가지로 14.9% 증가

$$\begin{aligned} \text{즉, } B &= A \times 0.111 \\ &= 541 \times (1 + 0.149) \times 0.111 \\ &= 60 \times (1 + 0.149) \end{aligned}$$

한편, 신규 사업자 수(C)는 B의 26.4%로 C = B × 0.264로 계산

□ 규제비용(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아래 각 조치별 비용 단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해정보방지팀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산출하였음

- 비용은 개발자 인건비로 조치별 개발자 분야와 소요시간을 명시

- 본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피규제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규제자 사업자는 해당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이 발생
- 본 개정안이 명시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4가지
  - 1) 불법촬영물등을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2)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필요시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 3) 정보의 특징 등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4)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처벌 관련 경고문 명시
- 1)번과 4)번 조치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1)번 조치의 경우 특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신고버튼 마련,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조치이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 4)번의 경우 웹이나 앱 상에 경고문을 명시하기만 하므로 유의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유의미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2)번(금칙어 기능)과 3)번(필터링 기능) 조치

(1) 금칙어 기능 조치에 따른 비용

- 금칙어 기능 적용을 위한 기능적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자 당 응용SW개발자 1/2 M/M(Man Month)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에 따르면, 응용SW개발자 월평균 임금은 6,395,094원

－ 이에 따라, 사업자 당 개발비용은 3,197,547 원 발생

$$\begin{aligned} \text{사업자 당 비용} &= \text{응용SW개발자 월평균임금} * 1/2 \\ &= 6,395,094 \text{ 원} * 1/2 \\ &= 3,197,547 \text{ 원} \end{aligned}$$

(2) 필터링 기능 조치에 따른 비용

- 자체적인 필터링 또는 상용중인 필터링을 사용하거나, 정부에서 배포예정인 표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공공DNA DB와 비교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

－ 정부는 표준 필터링 기술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필터링 기술 개발비용이 아닌 개발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

- 필터링 기술 적용을 위한 기능적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자 당 응용SW개발자 1 M/M(Man Month)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자체 필터링을 개발하거나 상용 필터링을 사용할 경우 필터링 개발 또는 이용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가 표준 필터링 기술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므로, 자체 필터링 또는 상용 필터링 활용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사업자 당 개발비용은 6,395,094 원 발생(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begin{aligned} \text{사업자 당 비용} &= \text{응용SW개발자 월평균임금} * 1 \\ &= 6,395,094 \text{ 원} \end{aligned}$$

### (3) 운영관리비

○ 개발 비용 이외에 해당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인건비 발생

- 사업자 당 IT시스템 운용자 5일(한달 기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IT시스템 운용자 일평균 임금은 278,605 원(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 따라서, 사업자 당 16,716,300 원(= 278,605 원 \* 5일 \* 12개월)의 운영관리 비용 발생

(4) 종합

- 2)번 금칙어 기능 적용 및 3)번 필터링 적용에 따른 비용은 일회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 중 1차년도에는 60개 사업자, 2차년도부터는 위에서 추정한 신규사업자에게 발생

- 사업자당 비용은 금칙어 기능 3,197,547원, 필터링 기능 6,395,094원

- 운영관리비용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 60개 사업자, 2차년도부터는 위에서 추정한 대상 사업자에게 발생

- 사업자 당 비용 16,716,300원

- ‘사업자 수 \* 사업자 당 비용’ 산식으로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아래 [표 2-1-3]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규제비용은 10년간 총 17,963 백만원(현재가치)이며, 연간균등순비용은 2,270백만원 발생([표 2-1-4] 참조)

〈표 2-1-3〉 연도별 세부비용

(단위: 백만원)

규제시행	금칙어	필터링	운영관리비	합계
1년차	192	384	1,003	1,579
2년차	58	115	1,153	1,326
3년차	67	134	1,321	1,522

규제시행	금척어	필터링	운영관리비	합계
5년차	90	179	1,755	2,024
6년차	102	205	2,006	2,313
7년차	115	230	2,307	2,652
8년차	134	269	2,641	3,044
9년차	153	307	3,042	3,503
10년차	176	352	3,494	4,021

〈표 2-1-4〉 규제비용분석표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규제시행	비용	편익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	1,579		1,511	
2년차	1,326		1,214	
3년차	1,522		1,334	
4년차	1,751		1,468	
5년차	2,024		1,624	
6년차	2,313		1,776	
7년차	2,652		1,949	
8년차	3,044		2,140	
9년차	3,503		2,357	
10년차	4,021		2,589	
계	23,735		17,963	2,270

□ 차등화 분석

○ 본 개정안은 적용 대상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전체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한정

\* 웹하드사업자(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적용대상이 전체이므로 차등화 실적 분석에서 제외

—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규모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지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므로 이들 수치를 기반으로 차등화 실적을 추정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 자료(대외비)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① 부가통신사업자, ② 기간통신사업자, ③ 기간·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매개하는 자로 나뉘는데, 해당 시행령 요건상 ②·③의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바, 부득이 하게 ①의 전수자료인 “부가통신사업자 자료(중앙전파관리소, '20. 07. 기준)”를 사용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수는 15,030개

— 따라서 규모에 따른 피규제자 범위 제한에 따라 피규제자 규모가 15,030개에서 1차적으로 541개로 감소했다고 가정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형이 최초로 규정되는 상황으로써 '특정유형 서비스 제공자'를 분류한 통계자료 미비하므로 부득이 비율을 통해 추정

－ 금번 시행령(안)에 따른 유형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초로 분류한 사안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적은 ①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②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③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 SNS·커뮤니티·대화방 등 플랫폼서비스 및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 검색엔진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

－ 이에 따라, 기존 '업종'에 따른 통계와는 상이한 유형으로, 승인통계를 활용한 유형분류 및 차등화가 곤란한 상황

○ 한편, 개정안에서 피규제자로 명시한 유형의 사업자 수 60개는 일정규모 이상인 541개 사업자 중 11.1%에 해당하며,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해당 유형 사업자 비중도 11.1%로 동일하다고 가정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유형분류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부득이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같음

- 따라서, 차등화 미실시시 직접비용이 발생하는 피규제자 수는 15,030개의 11.1%에 해당하는 1,667개로 가정
  - 따라서 차등화 실시에 따라 1차년도 피규제자 중 부가통신사업자 규모는 1,667개에서 60개로 감소
-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므로 앞서 사용했던 가정을 적용
  -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규모는 연평균 14.9%로 증가하며, 이 중 차등화 미실시 개정한 대상 유형 사업자는 11.1%, 이 중 신규사업자 수는 26.4%에 해당한다고 가정
- 이러한 가정에서 차등화 미실시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자 규모는 아래 <표 2-1-5>와 같음

<표 2-1-5> 차등화 미실시시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수(추정)

연도	대상 사업자 수	신규사업자 수
2021	1,667	
2022	1,915	506
2023	2,200	581
2024	2,527	667
2025	2,902	766
2026	3,334	880
2027	3,829	1,011
2028	4,398	1,161
2029	5,052	1,334
2030	5,804	1,532

□ 규제차등화 실적 추정

- <표 2-1-5>에서 추정된 사업자 수 및 신규사업자 수에 사업자 당 비용을 곱하여 차등화 미실시 시 규제비용을 산출하면 <표 2-1-6>과 같으며, 여기에 차등화 실시에 따른 규제비용을 차감하면, 다음과 같은 규제차등화 실적이 산출됨(<표 2-1-8>)

－ 규제차등화에 따른 규제비용 감소 총액은 10년간 총 480,830 백만원(현재가치)이며, 연간균등순비용 감소 총액은 60,767 백만원

<표 2-1-6> 차등화 미실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분석기준연도 2020년)

규제시행	비용	편익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 21)	43,857		41,968	
2년차	36,866		33,759	
3년차	42,349		37,110	
4년차	48,640		40,788	
5년차	55,859		44,824	
6년차	64,174		49,279	
7년차	73,705		54,160	
8년차	84,655		59,528	
9년차	97,247		65,438	
10년차	111,717		71,938	
계	659,069		498,793	63,037

〈표 2-1-7〉 차등화 실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분석기준연도 2020년)

규제시행	비용	편익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21)	1,579		1,511	
2년차	1,326		1,214	
3년차	1,522		1,334	
4년차	1,751		1,468	
5년차	2,024		1,624	
6년차	2,313		1,776	
7년차	2,652		1,949	
8년차	3,044		2,140	
9년차	3,503		2,357	
10년차	4,021		2,589	
계	23,735		17,963	2,270

〈표 2-1-8〉 규제차등화 실적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분석기준연도 2020년)

규제시행	비용(감소액)	편익	순비용현재가치 (감소액)	연간균등순비용 (감소액)
1년차	42,278		40,458	
2년차	35,539		32,545	
3년차	40,827		35,777	
4년차	46,889		39,319	
5년차	53,835		43,200	
6년차	61,861		47,503	
7년차	71,053		52,212	
8년차	81,611		57,388	
9년차	93,745		63,081	
10년차	107,696		69,348	
계	635,334		480,830	60,767

## 제 2 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2-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0조의2(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li> <li>2. 자료를 제출할 자</li> <li>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li> <li>4. 제출기한과 장소</li> <li>5. 제출방식</li> <li>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li> </ol> <p>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p>

####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21호, '19. 12. 10. 공포, '20. 6. 11.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금지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 2. 규제비용분석

### 피규제집단: 방송사업자, 미디어랩사

#### ○ 본 개정안의 피규제자는 방송사업자와 미디어랩사

- 방송사업자: 지상파 4사(KBS, EBS, MBC, SBS) 및 종편 4사(MBN, TV조선, 채널, JTBC) 등
- 미디어랩사: 총 6개사(코바코, SBS M&C, 미디어랩에이, MBN미디어랩, TV조선 미디어랩, JTBC미디어컴)

### 규제비용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19. 12. 10.)에 따라 자료제출의 대상, 요청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므로 규제 신설이 아님

-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도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경우 표준형이 아닌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피규제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항목은 자료 제출 요청시 발생하는 자료제출 비용이 해당
  - 하지만, 자료제출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시 발생하는 것으로 정기적이지 않으며 특정되어 있지도 않음
  - 따라서, 자료제출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임의적이며, 산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이라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는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등은 표준형이 아닌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는 아니나, 자료 제출의 방식 및 형식의 구체화라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어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이 유의미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존재



-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 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상시적인 업무 담당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무 발생에 따른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본 개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대로 직접비용이 유의미하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제3 절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3-1〉 방송법 제7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협찬고지) <신 설>	제74조(협찬 및 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찬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 협찬 2. 공익행사 협찬 3. 공익성 캠페인 협찬 4. 방송프로그램 예고 또는 공익행사 예고 협찬
<신 설>	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정부기관등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정부기관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을 하는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협찬고지를 요청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는 협찬고지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음
-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정부기관 등이 정부광고법에 따라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2. 규제비용분석

□ 피규제집단

- 방송사업자

□ 규제비용

- 협찬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라 보기 어려움

- 기존 방송법도 협찬고지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찬고지 등에 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찬주”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라 함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한다(SBS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텔레비전중양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주최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행사(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 등)
    -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행사
    - 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 라. 스포츠행사
    - 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문화탐방 등)
    -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8.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라 함은 방송편성 단위가 되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종료 시를 말한다. 다만, 뚜렷하게 독립되어 있는 수개의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 시를 말한다.
- 제3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 제4조(관련규정의 준수)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 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및 제49조(시상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5조(광고효과와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찬주명의 방송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예술·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②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①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내부 직원 인건비·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억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회당 제작비 7천만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5천만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 3. 삭제

④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이하 "시상품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⑥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이하 "장소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①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3. 삭제

⑤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 3. 삭제

⑥ 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협찬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①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품명 및 협찬주명 등과 함께 해당부분 소개 시 고지할 수 있다.

⑥ 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 시 협찬 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① 방송사업자가 캠페인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3. 삭제

⑤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 3. 삭제

⑥ 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협찬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 제4장 기타

제12조(제제조치명령의 절차)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제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5. 재심청구 기간·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등) ①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1호, 2018. 10. 1.>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 정부기관 등이 「정부광고법」에 따라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동 조항은 단순한 권리의무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규제강화라고 보기 어려움
- － 따라서, 본 개정안에 의한 추가적인 의무조항이 발생하여 규제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한편, 방송사업자가 동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적용대상은 아님

○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 요청에 의한 협찬고지 의무 자체도 유의미한 비용 발생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협찬고지로 인해 방송사에 발생하는 효과는 협찬매출(현금, 현물, 장소 등) 등의 편익이며, 비용은 협찬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협찬매출은 방송사의 주요 매출 중 하나로 협찬고지는 정부요청에 의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매우 일상적인 방송사의 영업행위로 추가적인 협찬고지에 따른 물리적인 비용은 사실상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자의 협찬매출은 7,945억 원으로 전체 방송사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

－ 정부요청에 의한 협찬고지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협찬거래와 상이하므로, 협찬매출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정부 요청에 의한 협찬고지는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협찬고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 협찬고지 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30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45초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협찬매출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협찬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협찬이 없는 프로그램도 상당수 존재
  - 또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협찬이 많이 붙는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러한 협찬고지 시간 제한은 크게 영향이 없음
  - 일반적으로 협찬주는 협찬고지가 지속되는 시간에 크게 관여치 않으며, 그 이유는 협찬고지 자체를 통한 홍보 효과보다는 협찬고지 화면을 캡처해서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내용 중 협찬물이 노출되는 것을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 요청에 의한 협찬고지가 야기하는 기회비용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은 없다고 판단됨

# 제 4 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4-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제2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① ~ ③(생략) 〈신설〉	제17조(금지행위)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제28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6.(생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SO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은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관련 금지행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

- 방송법은 SO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있음
- 현재까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IPTV 사업자들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신설 필요
- 최근(19. 2월) 유료방송사업자(IPTV·SO·위성방송)와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IPTV 법과 방송법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시, IPTV사업자들로부터 IPTV법에는 자료제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
- ※ 유료방송사업자 현황: SO(92개사), IPTV(3개사), 위성방송(1개사)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PP): 홈쇼핑PP(7개사), 일반PP(146개사), 데이터PP(16개사)
- 입법 미비 상태인 IPTV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IPTV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7조제4항)



-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안 제29조제1항제5호)

## 2. 규제비용분석

### □ 피규제집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KT, SKB, LGU+),

### □ 규제비용

- 본 개정안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접비용·직접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본 개정안의 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 기존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었으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록 IPTV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서 정부의 규제를 이행하고 있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은 없음

- IPTV3사는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SO, 위성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해오고 있음(매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작성 등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매출, 비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IPTV3사 또한 SO, 위성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또한, 자료제출에 따른 비용이 유의미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IPTV3사의 경우 정부 또는 관련기관과의 업무를 전담하는 대외정책팀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에 따른 자료제출을 위해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본 개정안에 따른 내용 또한 금지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이 인지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료제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료제출 비용은 직접비용 이라기보다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도 의무제출 자료의 구체화는 표준형이 아닌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비용 발생이라고 보기 어려움



현 행	개 정 안
<p>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p> <p>5. (생 략)</p> <p>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p> <p>6.·7. (생 략)</p> <p>②·③ (생 략)</p> <p>&lt;신 설&gt;</p>	<p>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5. (현행과 같음)</p> <p>5의2. -----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 ----- ----- -----</p> <p>6.·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⑤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의3(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의의결을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한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li> </ol> <p>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p> <p>2.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1. 해당 행위의 개요</p> <p>2. 관련 법령 조항</p> <p>3.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방안(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하며, 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p> <p>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p> <p>1. 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p> <p>2.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lt;신설&gt;  &lt;신설&gt;  ④ ~ ⑧ (생략)</p>	<p>1. 동의를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를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를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동의를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를결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를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⑩ 동의를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 ⑧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단서 신설&gt;</p> <p>1. ~ 17. (생략)</p>	<p>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li> <li>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ol>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 ~ 17. (현행과 같음)</p>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규정 신설(제32조의7제1항)

- 이통사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나,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 이통사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 방송·통신·IPTV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제50조제1항)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불공정 및 이용자 이익 침해 등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 근거 명확화

○ 동의의결제도 도입(제51조의3)

- 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로서는 부과하기 어려운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정방안 필요

- 특히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가 될 수 없어 이용자는 피해구제를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 필요
-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를결제를 도입함

〈표 2-5-2〉 주요국의 동의를결제도

구분	미국	EU	독일
명칭	동의명령 (Consent Order)	화해결정/확약결정 (Commitment decision)	의무부담부 확약 (Verpflichtungszusagan)
대상	제한없음(FTC법 위반행위)	제한없음*(경쟁법 위반행위) * 금전적 제재 사안은 제외	제한없음(경쟁법 위반행위)
의견 수렴	잡정안 공포 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60일)	잡정안 공포 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30일)	없음
효과	동의명령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이 다른 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좌 동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취소	규정 없음	취소 사유-사실관계 변화, 사업자가 이행 약속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처분이 사업자의 부정확한 정보에 기한 경우	좌 동

-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제53조제3항 제5호, 제6호)
  - 현재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감경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감경의 근거를 상위법에 명확히 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용자 보호 활동'을 추가
- 사업규모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차등부과(제104조제1항, 제5항)
  -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 단말기유통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천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 1천만원(제22조④)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어 양 법간에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도 자료제출 거부 사업자에 대해 단말기유통법과 동일하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천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51조의2)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시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
- 과태료 부과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만 가능할 뿐, 자료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특히, 불공정한 경쟁행위, 이용자의 이익 저해 등 시장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제재조치 필요
- 이에 따라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범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해외사례

- EU는 직전사업년도의 1일 평균매출액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집행규칙 제24조)

○ 타법사례

- 29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산정 기준 및 부과횟수 등은 차이가 있음
- 건축법 등 19개 법률은 1년에 1~2회 횟수를 제한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등 8개 법률은 일정기간 마다(매 90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2. 규제비용분석

□ 피규제집단

- 전기통신사업자

□ 규제비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규정 신설(제32조의7제1항)
-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을 예외 없이 제공하여야 함

- 본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수단을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
- 예외조항에 따라 제공하단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이러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원료 감소와 같은 비용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편익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본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관련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됨으로써, 소비자 효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개정안에 따라 피규제자 이외 집단(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간접편익이라고 볼 수 있음
- 방송·통신·IPTV 결합판매서비스 규제근거 상향(제50조제1항)
  - 규제근거 명확화를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음
- 동의의결제도 도입(제51조의3)
  -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 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 사업자는 조사 및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각종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은 동의의결제도를 명시한 것으로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의결제 활용에 따라 법적 분쟁 비용·시간이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본 개정조항에 따른 직접편익이 아닌 간접편익에 해당
- 과징금 감경사유 상향(제53조제3항 제5호, 제6호)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신설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는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 따르면,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은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항은 규제비용분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규모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차등부과(제104조제1항, 제5항)
  - 본 개정조항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제외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51조의2)
  - 본 규정은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반면, 이행 사업자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아울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편의 증대도 예상됨
  - 이 또한 과징금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심사 적용을 고려할 만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직접비용 또는 직접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제 6 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 ③ (생 략)</p> <p>〈신 설〉</p> <p>④ (생 략)</p> <p>제7조(허가 유효기간) (생 략)</p> <p>〈신 설〉</p> <p>제10조(재허가)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7조(허가 유효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10조(재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6조제3항 및 제4항 --.</p>

##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안 제6조제5항 신설, 제10조제3항 개정)
  - －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함
  -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 －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재허가 결과에 따른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타법사례
  - － 전파법 및 방송법은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승인

## 2. 규제비용분석

### □ 피규제집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 규제비용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제6조제5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항에 따라 직접비용·직접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해관계자 정취에 따른 물리적 비용은 정부의 행정비용에 해당하므로 규제비용 관리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규제자의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이행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허가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방송광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 해당 영향은 직접효과로 보기 어려우며, 본 개정조항에 따른 간접편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신설(제7조제2항 신설)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허가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사항
  - 본 개정조항을 통해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경우 방송광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영향은 본 개정조항에 따른 간접편익에 해당됨
- 결과적으로 본 개정항에 따른 직접비용·직접편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제 7 절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7-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조정외 개시) ① ~ ③ (생략)  <신설>	제91조(신청에 따른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직권에 따른 조정)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의8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통지가 당사자 모두에게 도착한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p>	<p>제91조의3(합의 권고) ① ----- ----- 제91조제1항 또는 제91조의2제1항 ----- -----.</p> <p>② ----- 제91조제1항 또는 제91조의2제1항 ----- ----- ----- -----.</p>
<p>제91조의4(생략)</p>	<p>제91조의5(현행 제91조의4와 같음)</p>
<p>제91조의5(조정안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p> <p>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6(조정안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5제4항----- ----- -----.</p> <p>② ---- 제91조의5제4항-----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1조의6(조정안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li> <li>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li> </ol>	<p>제91조의7(조정안의 종결)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91조의3----- -----</li> <li>제91조의4제1항----- -----</li> </ol>

현 행	개 정 안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 제91조의6제1항----- ----- ----- -----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제91조의6제2항-----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①·② (생략)	제91조의8(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 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91조의 7----- -----.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현행 방송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직권 조정 제도 필요
- ※ 방송법 개정(15. 12. 22.)으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도입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이 중단되어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 필요

- 방송법 제91조의8에 따른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추진
  - 직권 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정부의 자의적인 시장질서 개입 최소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여타 법령에서도 정부의 직권조정 권한을 마련하고 있음

## 2. 규제비용분석

### □ 피규제집단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 규제비용

- 본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분쟁비용 감소 및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따른 사업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 편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접 편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 되어 시장효율성 저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여지가 존재하나,
  - 본 개정조항의 경우, 직권조정의를 경우를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효율성 저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됨
-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직접편익은 없다고 판단됨

## 제 8 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 1. 주요 내용

〈표 2-8-1〉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개 정 안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용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1795%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주)에스비에스엔앤씨)			9.1342%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부산문화방송(주)	0.6165%
	지역	대구문화방송(주)	0.4576%
	지상파	광주문화방송(주)	0.3771%
	방송	대전문화방송(주)	0.4142%
	사업자	전주문화방송(주)	0.3773%



개 정 안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주)엠비씨경남 제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주)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주) 여수문화방송(주) (주)엠비씨충북 원주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 목포문화방송(주)	0.6368% 0.4494% 0.3706% 0.4017% 0.7280% 0.3265% 0.2991% 0.8151% 0.3360% 0.3074% 0.2961%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중소 지상파 방송 사업자	(제)CBS (제)불교방송 (제)평화방송 (제)극동방송 (제)원음방송 서울시교통방송본부 (제)부산영어방송재단 (제)광주영어방송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경인방송 (주)YTN라디오	1.7359% 0.5201% 0.4380% 0.2191% 0.2373% 0.0534% 0.0067% 0.0126% 1.4064% 0.1704% 0.1702%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전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G1 (주)제주방송	1.1483% 0.8941% 0.7480% 0.6237% 0.4144% 0.4164% 0.4283% 0.5653% 0.4070%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3.4887%

□ 추진배경 및 관련 내용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별표1),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등을 개정하기 위함
  
-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별표1] 재고시(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10조제1항)
  - －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5년~2019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 [별표2] 재고시(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10조제1항)
  - －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5년~2019년)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 2. 규제비용분석

### □ 피규제집단

- 지상파방송사업자

### □ 규제비용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사업자별 결합판매지원규모를 산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https://www.crms.go.kr/>.

국무조정실(2019),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7),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0),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20),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대외비).

● 저 자 소 개 ●

---

황 유 선

-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 민 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 남 두

-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석사
- 텍사스-오스틴 주립대 저널리즘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호 정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 경 은

- 이화여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통용합정책연구 KCC-2020-03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KCC Regulations in 2020)

---

---

2020년 12월 일 인쇄

2020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쇄 인성문화

---